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27

# 울 산 지 방 법 원

## 제 1 행 정 부

## 판 결

| | |
|---|---|
| 사 건 | 2021구합82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|
| 원 고 | A |
| | 소송대리인 변호사 ○○○ |
| 피 고 | ○○○○시 ○구청장 |
| 변 론 종 결 | 2022. 6. 16. |
| 판 결 선 고 | 2022. 8. 25. |

## 주 문

1. 피고가 2019. 5. 8. 원고에게 한 취득세 576,080원, 농어촌특별세 48,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27

## 1. 처분의 경위

가. 주식회사 B(이하 '이 사건 회사'라고 한다)은 산업용 기계류 및 부품제작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1986. 9. 12. 발행주식 총수 5,000주(1주 금액 10,000원, 자본금 5,000만 원), 주주명부상 주주 원고(2,550주, 51%), C(500주, 10%), D(500주, 10%), E(300주, 6%), F(300주, 6%), G(300주, 6%), H(500주, 10%), I(50주, 1%)로 하여 설립되었다.

나.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.

| 성명 | 출자주식 | 1992년말 | 1998년말 | 1999년말 | 2005년말 | 2016년말 | 2017년말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원고 | 2,550 | 11,220 | 31,720 | 31,720 | 31,720 | 31,720 | 52,000 |
| C | 500 | – | – | – | – | – | – |
| D | 500 | – | – | 7,280 | 7,280 | 7,280 | – |
| E | 300 | – | – | – | – | – | – |
| F | 300 | – | – | – | – | – | – |
| G | 300 | – | – | – | – | – | – |
| H | 500 | – | – | – | – | – | – |
| I | 50 | – | – | – | – | – | – |
| J | – | 3,300 | 7,800 | 7,800 | – | – | – |
| K | – | 3,080 | 7,280 | – | – | – | – |
| L | – | 2,200 | 5,200 | 5,200 | 5,200 | 5,200 | – |
| M | – | 2,200 | – | – | 7,800 | 7,800 | – |
| 합계 | 5,000 | 22,000 | 52,000 | 52,000 | 52,000 | 52,000 | 52,000 |

(단위:주)

다. 피고는 2019. 5. 8. '원고가 1999. 12. 31. 기준 특수관계인 D(매형)과 함께 이 사건 회사 주식 75%(39,000주)를 소유하였다가, 2017. 12. 31. 기준 D, L, M 명의 주식 합계 20,280주(= D 명의 주식 7,280주 + L 명의 주식 5,200주 + M 명의 주식 7,800주, 이하 '이 사건 주식'이라 한다)를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100%(52,000주)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과점주주 지분율이 25% 증가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지 않았다'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장부가액 87,076,375원에 추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27

가로 취득한 과점주주 지분율(25%)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인 21,769,09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576,080원(가산세 140,700원 포함), 농어촌특별세 48,980원(가산세 5,450원 포함), 합계 625,060원(가산세 146,150원 포함)의 부과처분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라.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. 3. 23. 이를 기각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, 4호증, 을 제6,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**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**

**가. 원고의 주장**

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100%의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였고, 다만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지인,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 등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, 이후 수차례의 유상증자 및 주식 양수도를 거쳐 2017. 12.경 D, L, M과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주주명부 등에 원고 명의로 100%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실질에 맞게 정리한 사실이 있을 뿐, 이로 인해 원고의 실질 주식 보유 비율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. 즉,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로 인해 원고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.

**나. 관계 법령**

별지 기재와 같다.

**다. 판단**

1)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단순히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27

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,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,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(대법원 1999. 12. 28. 선고 98두7619 판결 등 참조).

2)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각 증거, 갑 제3, 5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, 을 제8호증의 각 기재, 증인 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D, L, M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이었으므로, 원고가 2017. 12.경 무렵 위 각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'주식을 취득'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

가)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5,000주의 주금을 전액 납입하였으나, 당시 상법 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을 두어야 하였던 까닭에 주주명부 상 원고 외 7인을 위 1.의 나. 기재 [표]와 같이 형식상 등재하였다.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중 C는 원고의 동생, D은 원고의 매형, E은 원고의 친구, F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, G은 이 사건 회사의 공장장, H는 원고의 당시 배우자이다. D, E, F, I는 최초 주식 취득 당시 주식포기각서도 함께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27

나) 1992년 경 22,000주, 1998년 경 52,000주로 각 증자될 때에도 원고는 각 증자에 따른 신주의 주금 전액을 납입하였으나, 추가 명의신탁을 통하여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였다. 1992년 무렵 유상증자 및 주식양수도 이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J, L, M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들이고, K은 원고의 매제이다.

다) 원고는 D에게 1986. 9.경 500주 및 1999년경 7,280주, L에게 1992년경 2,200주 및 1998년경 3,000주(합계 5,200주), M에게 1992년경 2,200주및 2005년경 7,8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.

라) 이 사건 회사에서 1990. 1. 10.부터 2006. 1. 31.까지 근무하면서 1992년경 및 200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던 M은 1992년경 이 사건 회사의 요청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2,200주를 보유하다가 1998년경 위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, 2005년경에는 J 명의의 주식을 취득하고 2017년경 이를 다시 원고에게 전부 양도하였는데, 이는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.

마) 원고는 2019. 12. 20. D, L, M을 상대로 이 법원 2019가합18408호 주주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, 2020. 3. 25.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고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바)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등을 포함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.

사) 한편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인 D, L, M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던 정황은 없다.

아) 원고는 2017. 12.경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위 각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27

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는데, 이는 원고가 실질에 맞게 주주명부상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.

3) 따라서 원고가 2017. 12.경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
**3. 결론**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○○○

판사 ○○○

판사 ○○○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27

[별지]

# 관계 법령

■ 지방세법

제7조(납세의무자 등)

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(이하 "과점주주"라 한다)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(법인이 「신탁법」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·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)을 취득(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)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4조를 준용한다.

■ 지방세법 시행령

제11조(과점주주의 취득 등)

① 법인의 과점주주(「지방세기본법」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(이하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.

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의 비율"이라 한다)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. 다만,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

■ 지방세기본법

제17조(실질과세)

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·수익·재산·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(名義)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.

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·수익·재산·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. 끝.